

『哲宗大王實錄廳儀軌』의 謄錄 官文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fficial Documents Registered in
Cheoljongdaewang Sillokcheong Uigwe(『哲宗大王實錄廳儀軌』)

김 상 호 (Kim, Sang-Ho)*

◁ 목 차 ▷

- | | |
|------------------|------------|
| 1. 緒言 | 3.1 實錄廳 本廳 |
| 2. 官文書의 유형과 왕래기관 | 3.2 實錄廳 各房 |
| 2.1 官文書의 유형 | 3.3 儀軌廳 |
| 2.2 中央 및 地方官衙 | 4. 結語 |
| 2.3 契와 塵 | <참고문헌> |
| 3. 官文書의 내용과 특징 | |

< 초 록 >

본 연구는 『철종대왕실록청의궤』를 통해 의궤의 등록류로서의 성격과 특징을 밝히려는 것이다. 의궤에 등록된 관문서는 전체 지면의 4할을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높으며, 관문서 중에서는 강력한 집행을 요구하는 감결이 그 3/4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관문서의 내용은 주로 필요한 물자와 인원을 공급 받기 위한 것으로 모두 88개 기관과 왕래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호조 등 소수의 기관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의궤에 등록된 관문서는 청방별로 사소한 문건까지 등록이 되었지만, 주로 발급문서에 한정하였고, 부득이 누락된 것도 없지 않다.

要語: 의궤, 관문서, 등록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anghkim@daegu.ac.kr)

접수일: 2011년 9월 9일 최초심사일: 2011년 9월 14일 심사완료일: 2011년 9월 17일

<ABSTRACT>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Uigwe(儀軌) as a register and the contents of official documents registered in *Cheoljongdaewang Sillokcheong Uigwe* (『哲宗大王實錄廳儀軌』). The official documents registered in *Cheoljongdaewang Sillokcheong Uigwe* are given a great deal of weight enough to take 40% in the whole pages, and among them especially Gamgyeol(甘結) amount to 75%. Those official documents are connected with 88 institutes, but mostly with few offices, including Hojo(戶曹), and deal with the supply of necessary goods and workers. Most official documents registered are limited to issued documents, including even a piece of small document by every offices, rather than received things. However, there are some inevitable omissions.

Key words: Uigwe, official documents, register

1. 緒 言

철종은 1849년 6월 18세에 왕위에 올라 1863년 12월 3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14년간 재위한 조선의 25대왕이다. 그의 재위간의 역사를 기록한 철종 실록은 조선왕조에 의해 엮어진 마지막 실록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철종실록의 편찬 일정은 의궤에 잘 정리되어 있다. 먼저 1864년 5월 8일에 實錄廳을 北營에 設局하고 실록을 편찬하기 위해 春秋館 時政記 등을 奉出하였으며, 두 달 뒤인 7월 6일에는 實錄廳을 校書館으로 옮기고 실록의 찬수와 교정, 교수 등 일을 이듬해 5월까지 마무리하게 된다. 철종실록의 간인을 시작한 것은 같은 달 22일의 일이며, 인쇄본의 교정과 교수를 거쳐 간인을 윤5월 12일에 마치고, 그 달 24일 세초를 하게 된다.¹⁾

의궤에 등록된 實錄廳 本廳의 마지막 문건을 살펴보면, 1865년 5월 16일에 작성한 것이다. 이 날은 儀軌廳이 事目を 정하고 典醫監에 처소를 마련하여 활동에 들어간 때이다. 역시 의궤에 등록된 儀軌廳의 마지막 문건이 다음 달 윤5월 25일자의 것인 점을 고려하면, 儀軌廳의 활동 시기는 세초 이후 의궤를 정서하기 시작하여 대략 두 달 정도가 될 것으로 짐작된다.

현전하는 의궤의 목록을 살펴보면, 그 순서가 時日, 凡例, 座目, 啓辭, 移文, 甘結, 來關, 分年記, 卷秩, 財用, 恒式, 圖說, 封褻式, 奉安式, 賞典, 儀軌, 移文, 甘結, 來關, 禮關, 題名記序, 一房, 二房, 三房, 別工作의 순으로 기입되어 있다. 하지만 그것과 실제 의궤의 순차는 차이가 난다. 정확히 100장 분량인 의궤는 空面을 제외하면 본문이 기입되어 있는 것은 187면에 달하는데, 순차별로 각 지면의 분량은 目錄 2면, 時日 3면, 凡例 4면, 啓辭 57면, 移文 8면, 甘結 27면, 圖說 2면, 封褻式 1면, 奉安式 2면, 恒式 3면, 卷秩 2면, 財用 및 料布式 1면, 分年 4면, 來關 3면, 賞典 21면, 儀軌 4면, 移文 1면, 來關 1면, 甘結 4면, 禮關 1면, 題名記序 1면, 一房儀軌 5면(甘結 3면), 二房儀軌 4면(甘結 2면), 三房儀軌 6면(甘結 4면), 別工作儀軌 19면(手本 18면), 儀軌堂郎 1면이다. 啓辭와 甘結

1) 「哲宗大王實錄廳儀軌」 時日 참조.

등의 문건이 차지하는 지면이 모두 129면에 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의궤가 일종의 謄錄類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본 연구는 謄錄類로서 의궤의 성격과 특징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의궤에 등록된 官文書を 토대로 문건의 내용과 왕래기관의 성격, 문서등록 상의 특징 등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한다.

2. 官文書の 유형과 왕래기관

2.1 官文書の 유형

의궤에 등록된 관문서는 實錄廳의 本廳과 各房, 그리고 儀軌廳을 중심으로 왕래한 것들이다. 이를 발급 및 수취를 구분하여 해당 廳房別로 등록 문서의 유형과 그 양을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廳房別 관문서의 유형

| 구분 | | 발급 | | | | 수취 (관) | 계 |
|-----|-----|----|-----|----|-----|-----------|-----|
| | | 이문 | 감결 | 수본 | 소계 | | |
| 실록청 | 본청 | 27 | 98 | | 125 | 6 | 131 |
| | 일방 | | 10 | | 10 | | 10 |
| | 이방 | | 8 | | 8 | | 8 |
| | 삼방 | | 14 | | 14 | | 14 |
| | 별공작 | | | 10 | 10 | | 10 |
| | 소계 | 27 | 130 | 10 | 167 | 6 | 173 |
| 의궤청 | | 2 | 16 | | 18 | 2 | 20 |
| 계 | | 29 | 146 | 10 | 185 | 8 | 193 |

위 표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哲宗實錄廳儀軌』에 등록된 관문서는 모두 193건이다. 그 중 實錄廳에서 왕래된 것이 173건으로 많고, 儀軌廳의 것은

20건에 불과하다. 주목할 만한 점은 實錄廳이나 儀軌廳에서 발급한 문서가 185건인 반면 수취문서는 8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의례를 작성함에 있어서 발급문서는 망라적으로 등록하되, 수취문서는 예외로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문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사안의 중요성으로 등록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단지 일의 책임소재와 관련해 발급자 중심의 증거보전에 유념한 듯하다.

문서의 유형별로는 특별히 甘結이 146건으로 발급문서의 3/4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강력한 집행을 요구하는 형식의 문서로 甘結이 가장 적합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²⁾ 그와 달리 필요한 물량을 산출해서 문서로 이를 요청했던 別工作만은 결국 手本이란 형식의 문서를 생산하고 등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2.2 中央 및 地方官衙

한 건의 문서에는 수취기관이 하나가 아닌 복수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등록된 형식만으로는 그것이 관련기관별로 발급되었는지 아니면 하나가 회람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후자의 예도 적지 않았음을 짐작할 뿐이다.

『哲宗大王實錄廳儀軌』에 등록된 관문서에서 實錄廳 및 儀軌廳과 문건을 왕래한 것으로 드러나는 중앙 및 지방의 관아는 모두 61개 곳이다. 그 중 2회 이상 왕래한 건수가 있는 44개 관아만을 열거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官衙別 왕래건수

| 관아 | 건수 | 관아 | 건수 | 관아 | 건수 |
|-----|----|------|----|-----|----|
| 戶曹 | 72 | 司饗寺 | 7 | 造紙署 | 3 |
| 長興庫 | 47 | 校書館 | 6 | 左捕廳 | 3 |
| 繕工監 | 39 | 軍器寺 | 6 | 春秋館 | 3 |
| 工曹 | 36 | 禁衛營 | 5 | 漢城府 | 3 |
| 兵曹 | 30 | 全羅監營 | 5 | 觀象監 | 2 |

2) 尹仁洙, “朝鮮時代 甘結研究,” (韓國學大學院碩士學位論文, 韓國學中央研究院, 2008), 56.

| 관아 | 건수 | 관아 | 건수 | 관아 | 건수 |
|-----|----|------|----|-----|-----|
| 司瞻寺 | 26 | 典設司 | 5 | 奎章閣 | 2 |
| 義盈庫 | 25 | 慶尙監營 | 4 | 備邊司 | 2 |
| 別工作 | 20 | 禮曹 | 4 | 寫字廳 | 2 |
| 濟用監 | 20 | 忠淸監營 | 4 | 承政院 | 2 |
| 司宰監 | 19 | 訓練都監 | 4 | 儀仗庫 | 2 |
| 禮賓寺 | 19 | 宣惠廳 | 3 | 議政府 | 2 |
| 司僕寺 | 15 | 御營廳 | 3 | 典醫監 | 2 |
| 衛將所 | 12 | 瓦署 | 3 | 摠戎廳 | 2 |
| 軍資監 | 10 | 右捕廳 | 3 | 豐儲倉 | 2 |
| 廣興倉 | 9 | 掌樂院 | 3 | 계 | 496 |

위 표에서와 같이 實錄廳 및 儀軌廳이 각 관아에 보낸 문건은 戶曹가 72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長興庫, 繕工監, 工曹, 兵曹 등의 순서이다. 표 상으로는 44개 관아의 1/4에 해당하는 상위 11개 관아와 왕래한 것이 353건으로 496건의 3/4을 차지할 정도로 많다.

관아별로 문건의 왕래는 戶曹와 工曹의 경우에 물자의 공급과 제작 때문에, 그리고 兵曹의 경우에는 인원의 동원 때문에 잦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 長興庫는 돛자리 및 紙地 등의 공급과 관련하여, 繕工監은 토목과 건축의 일과 관련하여 문건이 많이 왕래하였을 것이다. 왕래 건수가 다음으로 많은 관아는 楮貨와 貢布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司瞻寺와 油類, 蜂蜜, 黃蠟 등 물건을 관리하는 義盈庫, 織物, 衣服, 織造物 등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濟用監 등이다.

왕래 관아 중에는 특별한 일로 단지 1건만의 문건이 왕래된 관아도 吏曹와 刑曹를 비롯해 廣興倉, 別營, 司諫院, 司憲府, 水源府, 承文院, 糧餉廳, 右巡廳, 義禁府, 典獄署, 左巡廳, 通禮院, 平市署, 香室, 惠民署 17개 곳이 된다. 주로 실록의 편찬을 위한 중요문서의 제공이나 인원의 야간통행 등과 관련된 것이다.

2.3 契와 塵

實錄廳 및 儀軌廳과 문건이 왕래되었던 기관은 중앙 및 지방의 관아뿐만 아니라 여러 契와 塵까지도 포함된다. 이는 무엇보다 물자를 빨리 공급 받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의뢰의 해당 지면에 기입된 契와 塵은 모두 27곳이다. 그 가운데 2회 이상 문건을 보낸 곳은 14곳으로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契塵別 왕래건수

| 기관 | 건수 | 기관 | 건수 | 기관 | 건수 |
|------|----|------|----|-----|----|
| 鴨島契 | 14 | 地衣契 | 5 | 立塵 | 3 |
| 炭契 | 13 | 軍契 | 4 | 柳筍契 | 2 |
| 唐沙器契 | 10 | 其人 | 4 | 竹契 | 2 |
| 沙器契 | 5 | 紙塵 | 4 | 眞絲契 | 2 |
| 索契 | 5 | 常沙器契 | 3 | 계 | 76 |

위 표에서와 같이 많은 문건이 내려간 곳은 鴨島契와 炭契, 唐沙器契이다. 鴨島契는 鴨島에서 나는 달풀[藺草]로 만든 밭[簾]과 비[筓]를 공물(貢物)로 바치는 契이고, 炭契는 숲을 공급하는 契이며, 唐沙器契는 중국에서 들여온 沙器를 공급하는 契이다. 이 세 곳의 합이 37건으로 전체 88건의 4할 이상을 차지한다. 결국 각 契에서의 물품 조달은 실록 편찬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조직, 공간과 인원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일종의 소모품과 더 관련이 깊은 것들이라고 볼 수 있다.

단지 의뢰 등록문서에서 그 이름이 한번만 보이는 契와 塵은 芎末契, 金契, 馬尾篩契, 白木塵, 細繩契, 松(-)契, 雨傘塵, 長木契, 車契, 眞絲塵, 彩索契, 筆墨契 등 12개 곳이다. 일상적이라기보다는 특별하거나 시급한 일로 문건이 왕래되었다고 하겠다. 실록의 裝績과 관련하여 眞絲契와 별도로 같은 문건이 眞絲塵에도 발급된 사실이 있어 주목할 만하다.

3. 官文書의 내용과 특징

3.1 實錄廳 本廳

3.1.1 移文

本廳에서 발급한 移文으로 의궤에 등록된 것은 모두 27건에 달한다. 北營에 實錄廳을 설국한 5월 8일 당일부터 인본의 교정이 끝날 무렵인 이듬해 윤5월 7일까지 13개월간에 작성된 것이다. 그 중 초기 한 달간에 작성된 것이 10건으로 그 1/3 이상, 그리고 마지막 두 달간의 것이 9건으로 정확히 1/3을 차지한다. 이는 일을 시작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일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건이 왕래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각 문건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本廳의 移文목록

| 순서 | 일자 | 기관 | 내용 |
|----|-------------|------|--|
| 1 | 1864 5/8 | 戶曹 | 임시로 北營에 本廳을 設局하니 제 處所 所用雜物을 마련해 輸送할 것 |
| 2 | 同日 | 戶曹 | 校書館을 처소로 쓸 수 있도록 修補 物力을 마련해 지급할 것 |
| 3 | 同日 | 戶曹 | 各司는 제 때 各物種을 進배할 것 |
| 4 | 同日 | 戶曹 | 本廳의 茶母 2명을 定送할 것 |
| 5 | 5/11 | 兵曹 | 承政院 待令 軍士 등의 雇價를 逐朔하여 지급할 것 |
| 6 | 同日 | 戶曹 | 計士 2人 등 42명의 5월 點心米를 마련해 지급할 것 |
| 7 | 同日 | 戶曹 | 計士 2人(추가인원)의 5월 點心米를 마련해 지급할 것 |
| 8 | 5/15 | 三南監營 | 正本 印出의 楮注紙를 9월까지 無上敦厚하게 하여 올릴 것(慶尙道 100권, 全羅道 80권, 公忠道 70권, 每張 長 4尺1寸, 廣 2尺6寸, 厚 1分) |
| 9 | 5/17 | 錦營 | 正本紙를 지급하니 9월이 아닌 8월내 上送할 것 |
| 10 | 6/5 | 戶曹 | 計士 4人 등 44명의 6월 點心米를 마련해 지급할 것 |
| 11 | 7/4 | 戶曹 | 計士 4人 등 44명의 7월 點心米를 마련해 지급할 것 |
| 12 | 8/3 | 戶曹 | 計士 4人 등 44명의 8월 點心米를 마련해 지급할 것 |
| 13 | 9/1 | 三南監營 | 楮注紙를 빨리 上송할 것 |
| 14 | 9/8 | 戶曹 | 郎廳이 앉을 毛狗皮 方席 15호를 마련해 上송할 것 |

「哲宗大王實錄廳儀軌」의 謄錄 官文書에 관한 연구

| 순서 | 일자 | 기관 | 내용 |
|----|-------------|---------------|---|
| 15 | 10/3 | 戶曹 | 地衣가 破傷하니 改備하여 入披할 것 |
| 16 | 10/8 | 水源府留守 全羅監司 | 校正하려고 하는데 도착하지 않은 時政記 分量을 校吏를 정해 빨리 上송할 것 |
| 17 | 1865 2/2 | 戶曹 | 計士 4人 등 44명의 오는 3월 點心米를 마련해 지급할 것 |
| 18 | 4/2 | 戶曹 | 計士 4人 등 44명의 4월 點心米를 마련해 지급할 것 |
| 19 | 4/19 | 戶曹 | 오래된 地衣와 方席을 새로 마련해 上송할 것 |
| 20 | 4/25 | 戶曹 兵曹 | 唱準 이하 工匠 등 料布를 戶曹와 兵曹에서 지급할 것 |
| 21 | 5/14 | 戶曹 兵曹 | 印役의 員役 1달 料布를 마련해 지급할 것(計士 4인, 書吏 20인, 書寫 2인, 庫直 2명, 使令 12명, 政院日記守直使令 2명, 內閣日省錄守直使令 2명) |
| 22 | 5/4 | 戶曹 | 計士 4人 등 44명의 5월 點心米를 마련해 지급할 것 |
| 23 | 5/6 | 戶曹 兵曹 | 料布 지급용 米木을 다 쓰고 없으니 米 20石, 木 2同을 上송할 것 |
| 24 | 윤5/5 | 戶曹 兵曹 | 料布 지급용 米錢을 다 쓰고 없으니 米 20石, 錢木 200兩을 上송할 것 |
| 25 | 윤5/6 | 戶曹 | 計士 4人 등 44명의 윤5월 點心米를 마련해 지급할 것 |
| 26 | 윤5/7 | 戶曹 兵曹 | 本廳 曾經堂郎題名錄을 修正 分送해야 하니 錢 각 60兩을 上송할 것 |
| 27 | 同日 | 戶曹 | 貢人에게서 쓴 것을 소요된 바에 따라 會減할 것 |

위의 목록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문건의 내용은 일을 시작하면서各司로 하여금 물종을 제 때 진배할 것, 그리고 일을 마무리하면서 戶曹로 하여금 貢人에게서 쓴 것을 회감토록 하는 것 등 일의 원칙과 관련된 것들이 다수이다. 구체적으로 茶母의 定送, 時政記의 上送, 題名錄의 수정 비용에 관한 소수 문건 외에는 대부분 사역 인원의 料布와 點心米, 그리고 印出用 楮注紙, 地衣方席類 등 극히 제한된 내용이다.

개별문건이 복수의 관아에 전달되는 경우를 고려하면, 위의 27건의 문건은 연 37건의 문건에 해당한다. 그 중 戶曹에 보낸 것이 22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역원의 料布와 관련해 兵曹에 보낸 것이 6건이다. 특별히 인출용지의 건으로 5월 15일, 그리고 그 독촉의 일로 9월 1일에 忠淸道와 慶尙道, 全羅道の 三南 監營에 보낸 문건이 있다. 그런데 5월 17일에 유독 錦營에만 上송의 기한을 앞당긴 내용의

「哲宗大王實錄廳儀軌」의 謄錄 官文書에 관한 연구

| 순서 | 일자 | 기관 | 내용 |
|----|------|---|--|
| 3 | 同日 | 戶曹/工曹/禮曹/司僕寺/濟用監/司 稟寺/長興庫/繕工監/校書館/典設 司/司瞻寺/瓦署/左捕廳/右捕廳/炭 契/其人/筆墨契/地衣契 | 印信, 楨子, 文書소용의 楮注紙, 白休紙 등 觀象 監에 진배하고, 捕卒 2명 待舍할 것 |
| 4 | 同日 | 長興庫/司瞻寺 | 本廳 書吏 소용 楮注紙, 白紙, 白休紙 진배할 것 |
| 5 | 5/5 | 各司 | 實職과 軍職을 막론하고 각 아문에 知委할 것 |
| 6 | 5/6 | 戶曹/工曹/別工作/繕工監/司稟寺/唐 沙器契/瓦署/禮賓寺/軍資監/廣興倉/ 司宰監/炭契/地衣契/典設司/濟用監/ 柳사契/長興庫/長木契/鴨島契/索契 | 8일에 北營에 本廳이 始役하니 堂上 郎廳 소용 각양 물중을 戶曹 別例房에 즉각 진배할 것(大黃 筆 2柄 등 29종) |
| 7 | 5/7 | 各司 | 8일 始役 관련 절차를 거행할 것 |
| 8 | 同日 | 濟用監 | 紅木 4幅, 楸 3件을 진배할 것 |
| 9 | 同日 | 別工作 | 8일 時政記 移安하니 奉安庫 封鎖할 大鎖鑰 3部 와 政院日記, 內閣日省錄 藏峙할 3層卓子 4坐를 진배할 것 |
| 10 | 5/8 | 政院/內閣 | 政院日記, 內閣日省錄을 이안해야 하는데, 차차 移封할 때마다 變번이 草記하기 미안하니 전례 에 따라 거행할 것 |
| 11 | 同日 | 長興庫 | 文書匠에 쓸 厚油紙 2張을 진배할 것 |
| 12 | 同日 | 觀象監 | 千支 相考할 千歲歷 1件을 진배할 것 |
| 13 | 5/9 | 工曹/繕工監/司僕寺/義盈庫/校書 館/別工作/鴨島契 | 印出匠, 粧册諸員 각 3명 대령하고, 인출소용 濕 紙板 3立 등 진배할 것 |
| 14 | 同日 | 戶曹/濟用監/別工作 | 白木揮帳 3件 등 진배할 것 |
| 15 | 同日 | 戶曹/工曹/司瞻寺 | 首陽梅月 30丁 등 진배할 것 |
| 16 | 同日 | 工曹/別工作/司稟寺 | 奉安處 守直, 政院 內閣 使令 所用物種 진배할 것 |
| 17 | 5/12 | 各司 | 入啓單子 違錯의 폐가 없게 할 것 |
| 18 | 5/13 | 戶曹/工曹/長興庫/司瞻寺/禮賓寺 | 草册次 白紙 30卷, 啓目 및 草記次 楮注紙 1卷 등 진배할 것 |
| 19 | 同日 | 別工作/典獄署 | 日用雜物을 관례를 비추어各司는 대령하고, 形 具인 刑板, 笞杖을 진배할 것 |
| 20 | 同日 | 各司 | 일이 중요하고 어려우니 勿侵하고, 비록 備局 內閣이라도 모두 公文과 私通으로 왕복하니 임 의로 招致하지 말고, 역을 마칠 때까지 聽訟도 허락하지 않을 것 |
| 21 | 同日 | 兵曹 | 員役이 靚내 출입이 많으니 門標을 成給할 것 |
| 22 | 同日 | 戶曹/義盈庫/司宰監/炭契/其人 | 堂上房 2處 등에 燒木 爐炭을 逐朔 진배할 것 |
| 23 | 同日 | 戶曹/工曹/長興庫/司瞻寺/炭契/司 宰監/義盈庫/繕工監 | 各司는 진배물중을 戶曹에 보고하여 逐朔 會減 하고 기한에 늦지 않게 할 것 |
| 24 | 同日 | 訓練都監/禁衛營/御營廳/左捕廳/ 右捕廳/左巡廳/右巡廳 | 公私去來로 員役이 犯夜하는 일이 없을 수 없어 전례에 따라 夜標 成給하니 勿侵할 것 |

| 순서 | 일자 | 기관 | 내용 |
|----|------|--|--|
| 25 | 5/24 | 戶曹/工曹 | 書役 소용 黃筆 등 진배할 것 |
| 26 | 6/2 | 雨傘塵 | 箒竹 1부를 진배할 것 |
| 27 | 6/5 | 各司 | 褒貶을懸頭할 것 |
| 28 | 同日 | 軍資監/廣興倉 | 點心米 分給 및 工匠 頒料시 소용의 網席 2立, 木斗 升 각 1개씩 진배할 것 |
| 29 | 7/2 | 戶曹/長興庫/司僕寺/義盈庫/禮賓寺/繕工監 | 冊紙次 白紙 30권 등 진배할 것 |
| 30 | 7/3 | 戶曹/兵曹/長興庫/濟用監/別工作/軍契/繕工監/索契/軍資監/廣興倉 | 6일 校書館에 本廳을 移設하니 시정기 移奉시 소용의 架子 1부 등 진배할 것 |
| 31 | 7/4 | 戶曹/濟用監/繕工監/典設司 | 6일 移設하니 堂上 大廳 補簾遮日竹索을 갖추어 대령할 것 |
| 32 | 同日 | 戶曹/兵曹/軍契/濟用監 | 6일 時政記 移奉시 架子軍이 입을 青衣巾 各 4건 진배할 것 |
| 33 | 7/5 | 兵曹/軍契/衛將所 | 移設시 各樣雜物과 擔持軍 등 北營에 定送할 것 |
| 34 | 同日 | 各司 | 大廳 補簾遮日竹索 등 待畚할 것 |
| 35 | 7/6 | 兵曹/衛將所 | 移設시 雜物負持軍 5명 等待할 것 |
| 36 | 同日 | 議政府/備邊司/宣惠廳/承文院/吏曹/戶曹/禮曹/兵曹/刑曹/義禁府/漢城府/觀象監 | 實錄纂修시 政院 內閣日記, 日省錄, 備邊司 議政府狀啓軸, 禁府推案, 承文院事大文書, 詔勅, 觀象監災異 및 外方地震風雨文書, 兩銓除拜 및 登科規式文書, 戶曹田稅均役出役文書, 宣惠廳 各倉田賦 各年出役文書, 刑曹 漢城府獄訟文書, 禮曹儀註意章文書, 御使書啓 諸般文書 및 膳錄을 대령할 것 |
| 37 | 同日 | 戶曹/工曹/長興庫/義盈庫/司宰監/司贍寺/禮賓寺/別工作 | 物種을 전례에 따라 진배할 것 |
| 38 | 同日 | 戶曹/唐沙器契/工曹/司導寺 | 破帳布 10尺 등 진배할 것 |
| 39 | 7/10 | 戶曹/工曹/唐沙器契 | 紫硯 10面 등 진배할 것 |
| 40 | 同日 | 各司 | 堂上이 春秋館에 實錄奉覽차 나아갈 때 일을 전례에 따라 거행할 것 |
| 41 | 7/12 | 備邊司/司憲府/司諫院/戶曹 | 實錄纂修校正시 備邊司 災結總錄 및 兩司 啓辭 笏記를 대령할 것 |
| 42 | 同日 | 長興庫/戶曹 | 校正冊紙차 厚白紙 30卷을 진배할 것 |
| 43 | 同日 | 工曹/炭契 | 爐炭을 逐日 진배할 것 |
| 44 | 8/30 | 議政府 | 左議政이 明日 本廳에 行차하니 依幕 鋪陳 등을 來待할 것 |
| 45 | 9/21 | 工曹/濟用監/繕工監 | 屏風 3坐 등 진배할 것 |
| 46 | 10/4 | 各司 | 依幕 등 대령할 것 |
| 47 | 10/5 | 各司 | 매 5일 擧案 修로하여 入啓單子가 錯誤없게 할 것 |
| 48 | 10/7 | 戶曹/地衣契 | 薄鋪 地衣 대령할 것 |

「哲宗大王實錄廳儀軌」의 謄錄 官文書에 관한 연구

| 순서 | 일자 | 기관 | 내용 |
|----|--------------|--|--|
| 49 | 10/30 | 戶曹/軍資監/廣興倉 | 空石 10立 진배할 것 |
| 50 | 同日 | 唐沙器契 | 沙唾口 2個 진배할 것 |
| 51 | 12/4 | 各司 | 員役의 褒貶은 本廳事役に 專意할 것 |
| 52 | 12/6 | 戶曹 | 白木甲揮帳 1件 진배할 것 |
| 53 | 12/9 | - | 舉案을 掌吏는 修正 來納할 것 |
| 54 | 1865 1/28 | 戶曹/長興庫/軍器寺/義盈庫/繕工監/司僕寺/禮賓寺/別工作 | 厚白紙 30卷 등 진배할 것 |
| 55 | 2/8 | 寫字廳 | 補劃補字차 寫字官 3人을 校書館에 定送할 것 |
| 56 | 2/13 | 戶曹/唐沙器契 | 半眞墨 8兩 등 진배할 것 |
| 57 | 2/20 | 戶曹/工曹/別工作/濟用監/繕工監/長興庫/司僕寺/軍器寺/禮賓寺/司瞻寺/義盈庫/司藥寺/軍資監/廣興倉/唐沙器契/炭契/鴨島契/馬尾篩契 | 실록 印役시 소용잡물을 後錄하니 즉각 진배할 것(唱準, 補字官, 寫字官, 守藏諸員, 粧册諸員, 刻手匠, 印出匠, 均字匠, 眞漆匠, 小木匠 등 所用) |
| 58 | 2/24 | 戶曹/長興庫/司僕寺/義盈庫/繕工監/禮賓寺 | 厚白紙 20卷 등 진배할 것 |
| 59 | 4/20 | 戶曹/工曹/司宰監/沙器契/司瞻寺 | 唱準房 點火木 등 진배할 것 |
| 60 | 4/23 | 各司 | 依幕 등 대령할 것 |
| 61 | 4/25 | 戶曹/濟用監/繕工監/彩索契/唐沙器契 | 실록 校讎시 堂上 소용의 唐朱紅 2兩 등 진배할 것 |
| 62 | 4/27 | 戶曹/長興庫/禮賓寺/繕工監/義盈庫/司僕寺 | 膠末 5升 등 진배할 것 |
| 63 | 5/8 | 戶曹/繕工監/軍器寺 | 鑄字 부족해 木字 補刻시 空木付接에 들어갈 魚膠 2斤 등 진배할 것 |
| 64 | 同日 | 司瞻寺 | 刻手소용 白休紙 半斤 등 진배할 것 |
| 65 | 同日 | 戶曹/司宰監/炭契 | 唱準房 點火燒木炭 진배할 것 |
| 66 | 同日 | 工曹/別工作/司藥寺 | 印役 假家에 禁火의 도구 水甕 8坐 등 진배하고, 水軍 대령할 것 |
| 67 | 5/11 | 兵曹/衛將所 | 鑄字穢을 輸運시 軍人 8名을 校書館에 대령할 것 |
| 68 | 同日 | 軍資監/廣興倉 | 空石 120立 진배할 것 |
| 69 | 5/16 | 長興庫 | 白紙 1卷 진배할 것 |
| 70 | 同日 | 長興庫 | 실록 인출시 初再見에 들어갈 厚白紙 30卷 진배할 것 |
| 71 | 同日 | 紙塵 | 실록 인출시 空隔紙차 落幅紙 2張, 寫字官 소용의 竹淸紙 2張 진배할 것 |
| 72 | 同日 | 戶曹/寫字廳 | 실록 題目 및 檟標紙 인출 소용의 大節常墨 5丁 진배할 것 |
| 73 | 同日 | 各司 | 22日 실록 開印始役시 依幕 등 일 거행할 것 |
| 74 | 同日 | 戶曹/義盈庫/司僕寺/長興庫 | 실록 인출시 頭註均字차 黃蜜 1兩 등 진배할 것 |

| 순서 | 일자 | 기관 | 내용 |
|----|-------|---|--|
| 75 | 5/21 | 濟用監/惠民署/典醫監/芎末契/長興庫/立塵/禮賓寺/司宰監/細繩契/白木塵 | 실록 楨子 5부에 들어갈 芎末 5斗 등 진배할 것 |
| 76 | 同日 | 繕工監/司宰監 | 실록 인출 후 乾淨시 唱準소용의 細繩 5兩 등 진배할 것 |
| 77 | 同日 | 戶曹/豐儲倉/義盈庫/禮賓寺/眞絲塵/眞絲契/立塵/濟用監/司宰監/金契 | 실록 裝縑시 들어갈 물종을 진배할 것(45책 每册 衣次 草注紙 반張 등) |
| 78 | 5/22 | 司瞻寺 | 均字匠 소용 白休紙 10斤 진배할 것 |
| 79 | 同日 | 兵曹/濟用監/車契/衛將所/漢城府 | 실록 搗碄시 濟用監 소재의 春杵를 輸來할 軍人 10名, 車子 1兩을 대령할 것 |
| 80 | 5/23 | 戶曹/廣興倉/軍資監/紙塵/司瞻寺/繕工監/鴨島契 | 실록 搗碄시 隔紙차 白休紙 50斤 등 진배할 것 |
| 81 | 5/26 | 紙塵 | 竹清紙 1張 진배할 것 |
| 82 | 윤5/1 | 司宰監/柳筍契 | 黃楊木 熟正차 鹽 5升, 柎盤 2立 진배할 것 |
| 83 | 윤5/2 | 戶曹/豐儲倉/義盈庫/禮賓寺/眞絲塵/眞絲契/立塵/濟用監/司宰監/立塵 | 純祖大王附錄續編 裝縑시 들어갈 物種 진배할 것(5册 每册 衣次 草注紙 반張 등) |
| 84 | 윤5/4 | - | 厚白紙 5卷 진배할 것 |
| 85 | 同日 | 校書館 | 自作板 1立 진배할 것 |
| 86 | 윤5/5 | 司瞻寺/松(-)契 | 白休紙 1斤 등 진배할 것 |
| 87 | 윤5/8 | 長興庫 | 壯油紙 1束 진배할 것 |
| 88 | 同日 | 長興庫 | 厚白紙 20卷 진배할 것 |
| 89 | 同日 | 戶曹/紙塵/長興庫/繕工監/司瞻寺/鴨島契 | 白紋席 40立 진배할 것 |
| 90 | 同日 | 造紙署/兵曹/衛將所 | 紙匠 1名, 搗碄軍 8名 대령할 것 |
| 91 | 윤5/9 | 長興庫 | 白紙 面紙 52卷 진배할 것 |
| 92 | 同日 | 兵曹/衛將所 | 軍人 8名 더 정송할 것 |
| 93 | 同日 | 長興庫/司瞻寺 | 楮注紙 1卷 등 진배할 것 |
| 94 | 同日 | 戶曹/長興庫/繕工監 | 地衣 1浮 등 진배할 것 |
| 95 | 同日 | 造紙署 | 咨文紙 반반張 진배할 것 |
| 96 | 윤5/13 | 戶曹/兵曹/工曹/春秋館/漢城府/司僕寺/掌樂院/濟用監/繕工監/別工作/長興庫/典設司/軍資監/廣興倉/通禮院/儀仗庫/衛將所/香室/地衣契/炭契/竹契/索契/其人 | 16일 春秋館에 실록 봉안하니 綵華 6部 등 진배할 것 |
| 97 | 윤5/16 | 兵曹/衛將所 | 실록 鑄字機 還入시 軍人 8名 대령할 것 |
| 98 | 同日 | 內閣/政院/兵曹/繕工監/衛將所 | 內閣 日省錄 및 政院 日記를 16일 還送하니 架子 2部, 軍人 12名 대령할 것 |

위의 목록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實錄廳 本廳이 발급한 甘結의 내용은 대부분 특정 물품과 인원, 일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물종이나 인원을 진배, 또는 대령토록 한 것이다. 실록편찬의 진행순서에 따라 초기에는 인원의 정송과 대령에 관한 것이 많고, 이후 필요한 물품의 진배가 주를 이룬다. 간혹 행사가 있을 때 준비사항을 지시한 내용의 甘結도 다수가 있다. 또한 땀감이나 방석 등의 공급 같은 사소한 사유가 많고, 兵曹는 대개가 軍人의 대령에 관한 건이며, 하급관아 뿐만 아니라 議政府와 備邊司까지 甘結이 발급되었다는 사실 등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議政府의 경우, 실록편찬에 필요한 議政府狀啓軸 등 주요 문서들을 대령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實錄廳의 권위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한편 각종의 공물을 담당하는 각 契나 해당 물종을 취급하는 廳에 직접 문건을 보낸 예도 25건이 포함되는데, 이는 시일이 촉박했던 때문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甘結이 하나의 기관보다는 여러 기관에 전달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을 한 건에 담고 있어서 불가피한 일이지만 부분의 부수, 그리고 수취기관명이 누락된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 좀 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3.1.3 來關

實錄廳 本廳이 수취한 관은 모두 6건이 등록되어 있다. 鄭承源을 別工作의 책임자인 監役으로 삼는다는 繕工監의 문건 외에는 楮注紙의 상송과 관련한 三南監營의 문건이다.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本廳의 來關목록

| 순서 | 일자 | 기관 | 내용 |
|----|----------|---------|---------------------------------------|
| 1 | 1864 5/8 | 繕工監 | 監役 鄭承源을 別工作에 分差함 |
| 2 | 7/8 | 全羅道 觀察使 | 楮注紙 80卷을 9월말까지 納上하고자 함 |
| 3 | 7/25 | 慶尙道 觀察使 | 楮注紙 100卷을 9월말까지 상납하고자 함 |
| 4 | 9/20 | 全羅道 觀察使 | 楮注紙 80卷을 箱子에 넣어 4駄에 나누어 싣고 色吏를 정해 上送함 |
| 5 | 9/23 | 公忠道 觀察使 | 실록 正本紙 70卷을 上送함 |
| 6 | 10/17 | 慶尙道 觀察使 | 楮注紙 100卷을 상송함 |

위의 목록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의궤에 등록된 來關은 4개의 관아에서 보낸 것뿐이다. 위의 移文에서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戶曹나 兵曹에서도 關을 보냈을 것이다. 후속 연구를 통해 사례를 좀 더 조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3.2 實錄廳 各房

3.2.1 一房

本廳과 별개로 一房이 따로 필요한 물품의 수급과 인원의 동원을 위해 해당 기관에 내린 甘結은 10건에 달한다. 春秋館에 실록을 봉안한 후, 의궤 초고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종이를 진배토록 한 문건 외에는 모두가 초기의 것이고, 실록의 찬수에 소용되는 사소한 소모품을 진배받기 위한 건이 대부분이다. 戶曹와 長興庫에 대한 것이 각 5건, 工曹와 別工作에 대한 것이 각 4건으로 다수를 차지한다.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一房의 甘結목록

| 순서 | 일자 | 기관 | 내용 |
|----|------------|---------------------------------|--------------------------------|
| 1 | 1864 5/6 | - | 依幕 진포 등 일 각 衙門은 거행할 것 |
| 2 | 同日 | 兵曹/工曹/別工作/唐沙器契 | 楨子具鎖鑰 2部 등 진배하고, 守直軍士 2名 정송할 것 |
| 3 | 5/8 | 戶曹/工曹/繕工監/平市署/司藥寺/別工作/唐沙器契/常沙器契 | 黃筆 3柄 등 逐朔 恒式으로 畢役에 限해 진배할 것 |
| 4 | 同日 | 工曹/長興庫/軍器寺/別工作 | 硯刀 2柄 등 진배할 것 |
| 5 | 同日 | 義盈庫/其人/司宰監/炭契 | 溫埃 點火木 등 진배할 것 |
| 6 | 同日 | 戶曹/長興庫/司瞻寺/別工作/常沙器契 | 楮注紙 1卷 등 진배할 것 |
| 7 | 同日 | 戶曹/工曹/長興庫/義盈庫 | 白紙 20卷 등 진배할 것 |
| 8 | 同日 | 戶曹/軍資監/廣興倉/禮賓寺/瓦署/鴨島契 | 膠末 每日 1슴씩 진배할 것 |
| 9 | 6/7 | 戶曹/義盈庫/長興庫/司僕寺/繕工監/司宰監/鴨島契/炭契 | 白紙 20卷 등 진배할 것 |
| 10 | 1865 윤5/20 | 長興庫/司瞻寺 | 草儀軌차 白紙 1卷 등 진배할 것 |

3.2.2 二房

實錄廳의 二房에서 각 기관에 내린 甘結은 모두 8건이다. 一房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대부분은 초기에 실록찬수에 필요한 물품을 진배토록 한 것이며, 그 내용과 일자가 일치한다. 工曹와 長興庫에 대한 것이 각 5건으로 많은 편이다.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二房의 甘結목록

| 순서 | 일자 | 기관 | 내용 |
|----|---------------|--|-------------------------------|
| 1 | 1864 5/ | - | 依幕鋪陳 등 거행할 것 |
| 2 | 同日 | 工曹/長興庫/軍器寺/別工作/沙器契 | 櫃子具鎖鑰 2部 등 진배할 것 |
| 3 | 同日 | 戶曹/兵曹/沙器契/工曹 | 黃筆 각 3柄 등 진배할 것 |
| 4 | 同日 | 戶曹/工曹/司宰監/義盈庫/長興庫 | 溫埃 點火木 등 진배할 것 |
| 5 | 同日 | 長興庫/司瞻寺/別工作/沙器契 | 楮注紙 1卷 등 진배할 것 |
| 6 | 同日 | 工曹/司宰監/禮賓寺/炭契 | 後分土 2部 등 진배할 것 |
| 7 | 6/7 | 戶曹/軍資監/廣興倉/義盈庫/長興庫 /繕工監/禮賓寺/司僕寺/鴨島契 | 白紙 20卷 등 진배할 것 |
| 8 | 1865 윤5/20 | 工曹/長興庫/司瞻寺/司宰監/禮賓寺 /炭契 | 草謄錄 修正시에 들어갈 白紙 1卷 등 진배할 것 |

3.2.3 三房

實錄廳의 三房에서 별도로 각 기관에 내린 甘結은 모두 14건이다. 一房과 二房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숫자이다. 이는 7월 3일에各司에 보낸 문건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各房을 합설하면서 이후 몇 가지 필요한 물품을 三房이 요구한 때문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문건의 관리에는 다소 소홀한 듯 수취기관이 누락된 것이 두 건이다. 한편 三房의 5월 6일자 등록 문건을 통해서는 같은 날의 一房과 二房的 甘結이各司에 보내어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수취기관은 戶曹가 8건, 長興庫가 7건으로 다수를 차지한다. 一房과 二房, 三房이 같은 시기에 의궤의

작성에 필요한 종이를 진배토록 각각 다른 甘結을 내린 사실이 주목할 만하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三房의 甘結목록

| 순서 | 일자 | 기관 | 내용 |
|----|--------------|-------------------------------|---|
| 1 | 1864 5/ | 各司 | 依幕 등 각 衙門이 거행하고, 點火燒木 등 진배할 것 |
| 2 | 同日 | 戶曹/工曹/兵曹/別工作/長興庫/唐沙器契/沙器契 | 櫃子具鎖鑰 2部 등 진배할 것 |
| 3 | 同日 | 司瞻寺 | 白休止 1斤 진배할 것 |
| 4 | 同日 | 戶曹/工曹/長興庫/司瞻寺/禮賓寺/鴨島契 | 本房 堂上 8員, 郎廳 8員 黃筆 각 3柄 등 진배할 것 |
| 5 | 同日 | 戶曹/工曹/長興庫/義盈庫/繕工監/鴨島契/常沙器契 | 白紙 20卷 등 진배할 것 |
| 6 | 6/7 | 戶曹/工曹/別工作 | 書板 등 각 17件 진배할 것 |
| 7 | 同日 | 戶曹/義盈庫/長興庫/司僕寺/繕工監/司宰監/鴨島契/炭契 | 白紙 20卷 등 진배할 것 |
| 8 | 7/3 | 各司 | 各房을 지금부터는 舍設하니 逐朔恒式으로 진배物種을 전례에 따라 진배할 것 |
| 9 | 同日 | 戶曹/司僕寺/長興庫/義盈庫/禮賓寺/繕工監 | 白紙 30卷 등 진배할 것 |
| 10 | 同日 | 戶曹/工曹/鴨島契 | 木水桶 換納할 것 |
| 11 | 9/2 | - | 毛方席 15坐 修補에 들어갈 麻絲 5絛 등 진배하고 方席匠 3명 대령할 것 |
| 12 | 10/4 | 戶曹/長興庫/義盈庫/繕工監/司僕寺 | 厚白紙 15卷 등 진배할 것 |
| 13 | 1865 5/20 | - | 實錄印役시 들어갈 粉板 6面을 만들어 진배할 것(금번에는 종이로 대용함) |
| 14 | 윤5/21 | 工曹/長興庫/司瞻寺 | 草儀軌 소용 白紙 1卷 등 진배할 것 |

3.2.4 別工作

의궤에 등록된 別工作의 문건은 모두가 상관에게 보고하는 형식인 手本으로 총 10건이다. 작성시기별로는 말기의 것이 초기의 것보다 많다. 다른 문건과 달리

그 일자나 수취기관의 이름을 기입하지 않은 특징이 있다. 참고로 實錄廳 本廳이 5월 7일자로 別工作에 보낸 甘結은 다음날 時政記를 北營에 이관하니 奉安庫의 封鎖차 大鎖鑰 3部, 그리고 政院日記와 內閣日省錄의 藏峙차 3層卓子 4조를 즉각 진배하라는 내용의 문건이다. 이에 대해 別工作은 같은 5월 7일자 手本에서 政院日記와 時政記를 담은 3層卓子 7소에 들어갈 목재와 日省錄을 담은 平卓子 1소에 들어갈 목재를 계산하여 문건에 적고 있다. 그리고 해당 手本에서 一房과 二房, 三房이 공히 別工作에 요구한 문서 담은 櫃子에 대해서도 전체 15部に 들어갈 목재와 자물쇠 등 물품을 적어 놓고 있다. 手本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別工作의 手本목록

| 순서 | 일자 | 기관 | 내용 |
|----|----------|----|---|
| 1 | 1864 5/7 | - | 櫃子 등 造作에 들어갈 물력 지급함 |
| 2 | 同日 | - | 雨漏 등 造作에 들어갈 물력 지급함 |
| 3 | 7/ | - | 硯匣 등에 들어갈 물품 지급함 |
| 4 | 1865 3/ | - | 唱準 소용 大書案 등 물력 지급함 |
| 5 | 5/ | - | 實錄印出시 印出匠 刻手匠 등 소용의 器皿 등 조작에 들어갈 물력 지급함 |
| 6 | 5/ | - | 工匠假家 조성 등에 들어갈 것을 지급함 |
| 7 | 同日 | - | 實錄入盛櫃 등 조작에 들어갈 물품 지급함 |
| 8 | 同日 | - | 實錄印役시 印出紙乾淨廣卓子 등에 들어갈 물력 지급함 |
| 9 | 윤5/ | - | 彩輦 등 修補에 들어갈 물력 지급함 |
| 10 | 윤5/ | - | 각양 物種 實入과 用還의 수를 구별해 實入함 |

3.3 儀軌廳

3.3.1 移文

儀軌廳의 摠裁官은 左議政인 金炳學이 맡았다. 그는 吏曹判書로서 一房의 堂上을 맡았던 인물이기도 하다. 의궤에 등록된 儀軌廳의 移文은 2건에 불과하

다. 그 내용은 實錄廳 本廳의 예와 마찬가지로 초기 인건비 지급에 대한 것으로 兵曹와 관련성이 있다. 정리하면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儀軌廳의 移文목록

| 순서 | 일자 | 기관 | 내용 |
|----|---------------|---------------------|-----------------------------------|
| 1 | 1865 윤5/20 | 兵曹 | 儀軌 修正시 軍士 2名 두 달 雇價를 마련해 지급할 것 |
| 2 | 同日 | 訓練都監/禁衛營/御營廳/ 兵曹 | 實錄 洗草시 員役 등 供饋를 전례에 따라 지급하고 輸送할 것 |

3.3.2 來關

儀軌廳이 받은 關은 해당 의궤에서 그 원문이 등록되지 못하고 다만 표제에 사실을 밝히는 주석이 있을 뿐이다. 儀軌廳의 두 번째 移文에 따라 4개의 해당 관아에서 보낸 것으로 의궤 편찬 당시 해당 문건이 없어서 일괄 기입한 듯하다. 그 내용은 訓練都監과 御營廳이 錢 10兩, 禁衛營이 木 5疋, 兵曹가 錢 30兩을 각자 알아서 到付했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표 12>와 같다.

<표 12> 儀軌廳의 來關목록

| 순서 | 일자 | 기관 | 내용 |
|----|-----|-------------|--|
| 1 | 세초시 | 訓局/御廳/禁營/兵曹 | 員役 供饋차 訓局, 御廳 각 錢 10兩, 禁營 木 5疋, 兵曹 錢 30兩 |

3.3.3 甘結

儀軌廳이 내린 甘結은 16건으로 儀軌廳의 移設부터 실록세초 및 의궤작성에 소요되는 물품의 진배와 인원의 동원에 관한 것이다. 10일간의 단기간에 걸친 것으로 戶曹와 兵曹, 繕工監, 長興庫, 司贍寺에 상대적으로 많은 5건씩의 문건이

「哲宗大王實錄廳儀軌」의 謄錄 官文書에 관한 연구

전달되었다. 실록의 간인을 마치고 세초하기에 앞서 儀軌廳이 일을 시작하였는데 의례의 작성만이 아니라 세초의 일까지 맡았다는 사실, 그리고 實錄廳의 各房이 의례 초고작성에 소용되는 종이를 요구한 반면 儀軌廳은 그것을 포함해서 정서 및 장책에 들어갈 楮注紙를 진배토록 한 사실 등을 아래 등록 문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 <표 13>과 같다.

<표 13> 儀軌廳 甘結목록

| 순서 | 일자 | 기관 | 내용 |
|----|---------------|-----------------------------------|---|
| 1 | 1865 윤5/16 | 典醫監 | 實錄儀軌廳을 典醫監에 移設하니 거행할 것 |
| 2 | 同日 | 春秋館/兵曹/摠戎廳/宣惠廳/校書館/禁衛營/別營/左捕廳/右捕廳 | 儀軌廳 書吏 嚴致潤 등을 使役하도록 정하니 本役에서 除할 것 |
| 3 | 同日 | 司宰監/繕工監/義盈庫 | 點火 燒木 등 進배할 것 |
| 4 | 윤5/17 | 兵曹/衛將所 | 典醫監에 移設하니 軍人 12名을 校書館에 대령할 것 |
| 5 | 윤5/19 | 戶曹/長興庫/司瞻寺/義盈庫/禮賓寺/鴨島契 | 儀軌文書에 들어갈 白休紙 2斤 등 進배할 것 |
| 6 | 同日 | 戶曹/工曹/司瞻寺 | 實錄洗草를 24일 거행하니 文書에 들어갈 白休紙 1斤 등을 進배할 것 |
| 7 | 同日 | 長興庫/司瞻寺/司僕寺 | 草儀軌 割付에 들어갈 白紙 4卷 등 進배할 것 |
| 8 | 同日 | 戶曹/濟用監/典設司/繕工監/竹契/索契/地衣契 | 遮日巖 坐起處에 鋪陳할 屏風 등 排設할 것 등 |
| 9 | 윤5/20 | 春秋館/濟用監/兵曹/長興庫/繕工監/掌樂院/衛將所/儀仗庫 | 彩輦 1部 등 대령할 것 |
| 10 | 同日 | 兵曹/濟用監/繕工監/衛將所/索契 | 實錄洗草시 架子 1部 등 春秋館에 대령할 것 |
| 11 | 同日 | 兵曹/工曹/司宰監/繕工監/造紙署/校書館/軍契 | 紙筒 및 紙匠 大령할 것 |
| 12 | 同日 | 戶曹 | 實錄洗草시 休紙收去차 戶曹 郎廳 遮日巖에 進待하여 洗草에 처할 것 |
| 13 | 同日 | 各司 | 依幕 등 鋪陳의 알아서 거행할 것 |
| 14 | 윤5/25 | 工曹/長興庫/司瞻寺 | 實錄儀軌 正書 등에 들어갈 楮注紙 25卷 등 進배할 것 |
| 15 | 同日 | 戶曹/義盈庫/鴨島契 | 儀軌印出에 들어갈 大節常墨 5丁 등 進배할 것 |
| 16 | 同日 | 長興庫/軍器寺/濟用監/繕工監/義盈庫/司瞻寺/禮賓寺 | 儀軌 5冊 粧綴에 들어갈 楮注紙 5張 등 進배할 것 |

3.3.4 禮關

禮曹가 세초의吉日을 택하여 해당 일자에 거행하도록 儀軌廳에 보내온 문건이다. 그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별도로 등록한 듯하다. 예관을 내관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한 예를 다른 의궤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³⁾ 표로 작성하면 아래와 같다.

<표 14> 儀軌廳의 禮關목록

| 순서 | 일자 | 기관 | 내용 |
|----|---------------|----|---|
| 1 | 1865 윤5/17 | 禮曹 | 禮曹에 實錄 洗草 택일하게 하였는데, 日官이 윤5월 24일을 吉日로 推擇하였고, 윤희되었는바 이에 따라 시행할 것 |

4. 結語

『哲宗大王實錄廳儀軌』에 등록된 관문서의 성격과 해당 의궤의 謄錄類로서 두드러진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實錄廳의 本廳과 各房, 그리고 儀軌廳으로 구분하여 의궤에 등록된 관문서는 移文과 來關, 甘結, 禮關, 手本 등이 있으며, 啓辭를 포함할 경우 전체 지면의 7할을 차지할 정도로 의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이는 의궤가 일종의 謄錄類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의궤에 등록된 관문서는 전체 193건 가운데 강력한 집행을 요구하는 甘結이 146건으로 그 3/4정도를 차지한다. 이는 한정된 기간에 특정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임시기관으로서 實錄廳의 성격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셋째, 등록문서는 주로 필요한 물품과 인원을 공급받기 위해 그 일을 관장하는 기관, 즉 戶曹를 비롯한 61개의 중앙 및 지방관아, 그리고 鴨島契를 비롯한 27개의契 및 塵과 왕래한 것이다. 하지만 연 6백여 건에 달하는 문건의 대부분은 戶曹와

3) 『哲宗國葬都監儀軌』, 『憲宗大王實錄廳儀軌』 등 참조.

長興庫, 繕工監, 工曹, 兵曹, 司瞻寺, 義盈庫 등 소수의 중앙관아에 발송된 것이었다.

넷째, 實錄廳과 儀軌廳의 요구를 받들면서 각 관아 및 기관이 올린 手本이나 牒呈 형식의 문서 또한 상당수에 이르렀을 것이다. 그러나 의궤에 등록된 문서는 實錄廳이나 儀軌廳이 발급한 것이 위주이며, 수취한 것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무엇보다 의례적인 내용의 수취문서는 의궤 편찬 시 권질이 호한할 것을 염려해 수록범위에서 제외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사안으로 보아 극히 사소한 발급문서가 등록된 것은 일의 책임소재와 관련해 實錄廳이나 儀軌廳의 관점이 의궤편찬에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다섯째, 발급문서는 망라적으로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었을 것이나, 부득이 누락된 예도 없지 않았다. 三南 監營과 왕래한 문서의 앞뒤 내용으로 보아 몇 가지 문서가 빠진 정황이 있는데, 이는 의궤 편찬 시 해당 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 즉 분실 같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여섯째, 등록문서 가운데 수취관아, 또는 발급일자 기입이 누락된 예를 특히 實錄廳의 各房 문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기입 상의 관례나 단순한 실수라기 보다는 本廳에 비해 各房의 문서관리가 더 철저하지 못해 儀軌廳이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참고문헌>

「대전회통」.

「哲宗國葬都監儀軌」.

「哲宗大王實錄廳儀軌」.

「憲宗大王實錄廳儀軌」.

尹仁洙. “朝鮮時代 甘結研究.” 韓國學大學院 碩士學位論文. 韓國學中央研究院. 2008.

崔承熙. 「韓國古文書研究」. 城南: 韓國精神文化研究, 1981.

